##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 발의연월일 : 2024. 6. 13.

발 의 자:전현희·유동수·홍기원

김한규 · 김영배 · 박수현

김남희 · 김영환 · 이병진

허종식 • 이재관 • 이수진

임미애 · 복기왕 · 이용선

정을호 · 이학영 · 한민수

김용만 · 강준현 · 전진숙

김주영 · 정준호 · 차지호

박선원 • 조인철 • 민형배

임호선 • 박지원 • 송재봉

유종군 • 황운하 • 이건태

박균택 • 이용우 • 박희승

박은정 • 정일영 • 문금주

정진욱 • 김 현 • 김태선

김 윤 · 정성호 · 김기표

양부남 · 허성무 · 이광희

박홍배 · 강유정 · 황정아

안태준 • 부승찬 • 백승아

이정헌 · 남인순 · 장경태

오세희 • 박용갑 • 위성락

서미화 • 허 영 • 이개호

박지혜 · 문대림 · 신정훈

이상식 · 김성환 · 문진석 서영교 · 이성윤 · 김승원 박해철 · 민홍철 의원 (7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 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 3항 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대통령이 제1항제8호와 관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② (생	회피・기피 신청)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대통령이 제1항제8호와 관		
	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		
	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		
	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		
	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⑤</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u>⑥</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			
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